

제조물책임과 소송사례



김인철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PL전공담당교수

① 머리말

최근 발생한 전기밥솥 폭발사고와 불량 저질만두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단체에서는 불량만두 사건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법적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최근 전기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기기 용품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품목 103개사 제품에 대해 시험한 결과, 놀랍게도 30개사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설계부실, 생산결함, 불량재료의 사용과 건전한 경영관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들이다. 소비자는 이와 같은 결함제품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만 한다.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기존의 피해보상 제도와

소송절차의 기본이 되는 민법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소비자쪽에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입증능력이 취약한 소비자로서는 피해구제를 받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보호제도의 하나인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법이 도입되었다.

PL법은 이미 세계각국에서 도입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는 국가간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에 한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8조로 구성된 PL법이 2002. 7. 1에 비로소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정책과 무역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세계시장에서 극심한 경쟁을 극복하고,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안정된 무결함 제품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과업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②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이란 소비자가 제품 사용 중에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신체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하며, PL법은 이와 관련한 사항을 법으로 정한 특별법을 의미한다

③ 제조물책임(PL)법의 주요내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무과실책임

현행 민법750조 불법행위 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PL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을 결함으로 변경하여 제품의 무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하고,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도록 하고있어 소비자에게는 입증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손해

손해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손상을 입거나, 재산상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제조물의 범위

PL 적용대상은 제품 또는 가공된 농축산물과 부동산에 부착된 제품이다. 다만,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4) 결함의 분류

결함은 당해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의미하고,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설계결함

제품설계 단계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품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아 발생하는 제품결함을 의미한다. 이 결함은 제품의 안전설계 부재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고, 여기에는 원재료, 부품의 안전 및 품질설계의 부적합도 포함된다.

(나) 제조결함

생산공정에서는 안전성이 반영된 설계품질에 적합한 제품이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생산조건, 즉 설비, 재료, 작업자, 작업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들이 설정되어 있지않고, 또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과 방법, 절차들이 정확하게 이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리 통제활동도 미흡하게 되면 결국 공정능력이 저하되어 결함 제품이 양산된다.

(다) 표시결함

제품의 설계과정에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자는 그 위험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된 결함을 말한다. 여기에는 주의, 경고와 사용설명서 등이 부적절할 경우에도 포함되고 있다.

나. PL책임 주체

(1) 제품 제조자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는 완제품 및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에 대하여 PL책임을 지게 된다.

(2) 원재료, 부품 제조자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품의 결함은 완제품 제조자의 설계, 시방 등의 지시에 따라 생산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원재료, 부품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3) 주문자상표(OEM)부착 제조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제조자는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자이므로 OEM표시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진다.

(4) 수입업자

판매 또는 대어를 목적으로 하여 제품을 수입, 공급한 업자는 그 공급한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5) 판매업자(유통공급자)

제품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판매자 또는 공급자는 결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다. 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로 완제품 제조자가 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라. 면책

PL은 절대적인 무결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조자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도 다음의 면책사항을 입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

(1) 제품 유통시점에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제품이 내재한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완제품 제조업자가 설계, 재료, 공법 등에 대해 지시한대로 제조한 제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사와 협력업체 간의 관계가 일반적이다. 이 때에 모사와 협력업체(갑과 을의 관계) 간에 PL관련 책임소재에 관한 협약 또는 계

약서 등이 발생될 수 있다.

(3) 결함이 법률의 강제기준을 준수하여 이로 인해 발생된 경우

마. 입증책임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권리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게 하고 있다. 상위법인 PL법에서는 피해자는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손해가 제품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주어지고 있다. 이 점이 기존의 민법에 비해 PL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대폭 경감된 핵심내용이 되고 있다.

바. 소멸시효

PL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시효는 손해와 제조자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이 넘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

사. 민법의 적용

PL법 제8조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PL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④ PL법과 리콜제도와와의 차이

가. PL제도

(1) 성격

민사책임원칙의 변경

(2) 기능

사후적 손해배상, 소비자 안전보호책

RECALL
RECALL

(3) 근거법

제조물책임법

(4) 요 건

제조물의 결함, 손해발생,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나. 리콜제도

(1) 성 격

행정적 규제

(2) 기 능

사전적 위해제품 회수,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 안전 보호책

(3) 근거법

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4) 요 건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PL제도는 제품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사후 구제제도의 성격이며, 리콜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는 사전 예방제도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5 PL의 대응 기본방향

제조물책임의 대응방향은 PL예방대책(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PL방어대책(PLD: Product Liability Defence) 2가지 측면을 들 수 있다.

PLP대책방안은 설계개발, 제조공정, 유통의 전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관리시스템과 방법에 의하여 달성하고, PLD대책방안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소송대응방안과 항변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록문서의 확보 및 유지관리와 소송 전 화해 등에 의하여 추진한다.

6 소송사례

가. TV 폭발로 인한 화재발생 사건

(2000.3.5 대법원 민사 3부 판결)

(1) 사건내용

X보험회사 가입자 K씨가 TV를 보던 중 폭발로 불이 커튼에 옮겨 2층 내부가 전소되는 화재 발생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X보험이 제조회사인 E전자에게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6,000,000원을 지급토록 한 사건이다.

판결문에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조업자가 당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품안전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해 제조회사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폭발을 일으킨 제품이 내구연한이 넘어 갔으나 내구연한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할 뿐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였다.

(2) 시사점

이 사건은 규모가 적은 배상금액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사건내용으로 막대한 배상액이 나올 수도 있

다고 볼 수 있다.

(가) 제조자에게 제품결함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
는 입증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금후 불안정한 안
전성과 품질결함 제품을 생산 유통시킬 시는 어느
때나 거액 배상소송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 또한 내구연한이 5년에서 1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제조자의 면책이 인정되지 않은 점이다. 따
라서 내구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PL예방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또한 보증기
간이 초과 되었다고 하여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나. 가슴성형 수술(실리콘) 부작용

(1) 사건내용

미국 DW코닝의 성형 수술용 실리콘의 부작용으
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서 DW코닝이 총 40
억 달러의 기금을 창설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
불키로 한 사건이다.

(2) 시사점

PL관련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제
조자 또는 공급자는 막대한 배상금이 부과되는 중대
사건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 있는 제품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철저한 PL대
응체제의 구축이 더욱 요망된다.

다. 기타 PL사례

(1) 오토바이(일본Y사) 화재사건

(1982. 11 미국연방법원)

다른 차와 충돌하여 연료탱크의 뚜껑이 열려 화재
가 발생, 운전자가 중화상으로 인해 보행불능 상태가
되어, 화해금 700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2) 자동차(일본T사) 화재사건

(1983. 10 미국 플로리다주 항소심)

추돌 시 연료탱크가 열려 3명이 소사되었으며, 손
해배상금 500만 달러를 배상하였다.

7 문제점 및 대책방향

가. 문제점

(1) 징벌적 배상금의 문제

미국의 PL법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단순 불법행
위에 의한 통상적 배상금과 징벌적 배상금으로 구성
된다. 제조자 또는 공급자가 제조물에 중요한 결함
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제거 또는 회피할 수 있는 합리적
인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악의적으로
보아 막대한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제조자 또는 공급자는 심각한 경영손실
을 초래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이 발생
할 경우에는 더욱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사법개혁 차원에서 배심제 또는 참심
제의 도입 검토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 있어
앞으로는 우리도 징벌적 배상판례가 나올 수도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조자는 손실회피를 위
하여 무결함 생산체제 등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PL배상 수준의 문제

우리나라도 PL법에 의한 손해배상 수준이 엄격책
임에 입각하여 보다 엄중한 배상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온 나라를 경악케 한 불량만두 사건
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일반적인 부정식품 위반 시에
도 피해의 결과에 비해 몇 백만원의 벌금정도로 끝난
다면 그 법이 엄중하게 지켜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
이다.

PL법을 엄격하게 운영하면 결국 제조자의 무

결점 생산체제를 실현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하겠다.

(3) PL에 대한 관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제조자도 PL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조자의 경우에는 아직 이렇다 할 PL관련 배상판결이 없다는 것이 이유일 수도 있겠으나, 사전 경영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4) PL대응방안에 대한 오해

PL사건은 제품의 안전성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배상 사건 등으로 인해 PL대응방향의 대부분을 제품안전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조자는 제품 설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게 안전설계를 반영하고, 이 안전설계는 제품규격화와 제품생산 프로세스 단계에서 품질특성으로 전환되어 종합품질보증체제 하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PL대응방안의 핵심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무결점, 불량 제로화 시스템을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다.

나. 개선방향

(1) 제품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는 재산상으로는, 인명 피해면에서도 대형 사고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고이다. 따라서 특히 화재원인이 되는 전기기기, 전선, 전자제품과 결함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 연관 제품들은 특히 PL 예방대책을 설정, 이행하여야만 하겠다.

(2) PL대응체제는 무결함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종합품질보증체제로 구축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형식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시스템은

적극 배제하고 걸치레식, 기능적인 체제가 아닌 보증성 있는 시스템을 구축, 실현해야만 한다.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대항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검사조건 등이 과연 품질의 보증성이 있는 것이냐가 대항력을 가지는 요건이 된다.

(3) PL체제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경영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 방법, 기법들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고도의 이론을 겸비한 인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만 성공적일 수가 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과 방법인가가 중요하고, 이들이 곧 성공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4) PL관련기관 및 사법기관은 PL관련 조사 또는 소송에 PL 및 경영관리 전문가를 중요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PL관련 소송은 순수 법리만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8 맺음말

결론적으로 PL법은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도입 및 시행하고 있고, EU에서는 역내 유통을 규제하는 일종의 무역장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우리도 PL대책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아직은 PL에 대한 관심과 대응체제 등의 노력이 미진한 편이나 정부공공기관, 소비자 단체 등 관계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PL대상 기업들은 PL대응체제구축을 당면한 경영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